

최신 판례 예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 ④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재산-6393, 2022.05.25

질 의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1+1)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후 1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의2제4항이 적용되어 비과세되는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1개의 주택이 「도정법」 제76조제1항제7호라 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톤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338, 2022.03.28

질 의

- 질의법인은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으로 2021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 한편, 질의법인은 2020 사업연도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계상된 외화환산이익 관련 △유보(**.*억원) 및 외화환산손실 관련 유보(*.*억원)가 있으며
 - 동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에는 해운소득 부문과 비해운소득 부문에서 발생한 금액이 합산되어 계상됨
 - * 질의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등 평가방법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외화자산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

질의

- 톤세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의 세무처리방법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의 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법 같은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무기간의 종료일에 소득령§167의3①(2)마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전법규재산-39, 2022.04.08

질 의

-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말소 이후에도 임대료 증액 상한 (5%)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국내업체로부터 광고영상물을 공급받아
외국광고주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공급시
영세율 적용대상임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광고영상물을 공급함에 있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3705, 2022.05.25

질 의

-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예인의 국내소속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외국법인에 광고영상을 공급할 예정으로
- (질의1)질의법인이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광고물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 (질의2)연예인 소속사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광고영상물 제작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회 신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의 소속사(이하 "A사")를 통해 광고영상물을 제작받아 외국광고주에게 공급함에 있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반입한 후 인도·인수하는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건 광고영상물이 전자적 무체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